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4-50호

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폐지

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78-23번지 외 6필지 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폐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폐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변경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0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방이동 178-23번지 외6필지 / 3,576.2㎡

3. 사업시행자 :

- 성 명 : 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(대표 한성플래너스)
- 소재지 :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1509호(서초르네상스오피스텔)

4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0개월**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** 2023. 2. 2.**6. 사업계획 폐지의 사유 :** 사업시행자인 주민합의체의 해산 신고 처리**7. 주민합의체 해산고시일 :** 2024. 6. 13.**8. 의제사항 :**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5조

- 제1항 제10호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)
- 본 사업계획인가 폐지로 변경 결정

9. 기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 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·고시하지 아니하며, 기타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(☎02-2147-2904)에 비치 보관